

|  
글. 김창길\_ Kim, Chang-gil

·  
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규제 개혁의 현실의 벽

## \_건축관련 임의규제 개혁에 부쳐

Endless wall against the reformation of regulation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규제 개혁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입지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수도권 집중완화의 벽을 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고 있다.

2008년 당시 수도권 규제 개혁을 믿고 투자 검토에 나선 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불발되자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기기도 했다. 국내 설비투자는 정체돼 있는 반면 해외 투자액은 2011년 276억달러, 2013년 306억달러로 급증한 이유다. 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와 전후방 산업유발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수만 개가 날아갔다. 규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경기 침체로 인한 한국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한 귀농인이 “상수도보호 관련 규제를 풀어 한과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내년에 허용하겠다”고 답을 했다. 듣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이요?”라고 되물었을 때 얼굴이 빨개진 윤 장관의 모습이 TV에 생중계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윤 장관은 즉시 해당과에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시했는데, 담당사무관은 이를 후 현장을 둘러 본 뒤 귀농인을 찾았다. 하지만 귀농인에게는 공장을 지어서는 안 될 이유만 잔뜩 늘어놓고 상사에게는 화재 위험과 폐식용유 문제 등을 거론하며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보고했다. 두 달이 지나도록 검토만 거듭하는 동안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지시가 떨어져 환경부는 부랴부랴 상수원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수원구역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건립을 허용한 사례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세계경제포럼에서 144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정부경쟁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정부경쟁력은 정부규제 항목이 2008년 24위에서 2014년 93위로 추락했고, 정책결정의 투명성 항목은 44위에서 133위로 추락했다. 이와 같은 수치로 살펴보면 규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벽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기업들은 법이나 규정의 개정으로 안 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가 더 무섭다고 한다. 관료들은 법을 개정해도 각종 행정지도나 구두지도를 통해 규제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경우도 많다.

현재 규제 개혁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손톱 밑 가시’로 ‘단순한 행정절차 규제’ 등으로 기업에 부담은 되지만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규제가 있고,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지적한 시장 진입제한 등 ‘기업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암적인 핵심 규제’로서 ‘염통 밑 고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염통 밑 고름의 규제로 수도권 규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서둘러 정비해야만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에



경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주)창우정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실무를 쌓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변동 글로리아타워, 부산 락앤스티치공장, 박순웅정형외과, 춘천 감정리주택, 화성 조암리주택 등이 있으며, 2011 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2 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2012 신진건축사상을 수상했다.



건축 임의규제 및 관행 신고센터(http://cafe.daum.net/promotearch)

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건축관련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지난 4~6월 숨은 규제 전수 조사, 7~8월 개선방안 지자체 협의, 9~10월 건축위원회 심의 및 표준조례 가이드라인 시달, 10~12월 숨은 규제 이행 실적관리 등을 진행했다. 이로써 건축규제 1,178건에 대하여 지자체 협의를 거쳐 696건은 폐지하고, 482건은 올해 3월까지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이번 숨은 건축 규제의 정비 현황 및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가 법규를 얼마나 다른 시각으로 보고 각종 규제를 하였는지 알 수 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절약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진행했고, 심지어 인천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의 건폐율을 15%이하, 조경면적 30%이상, 차도율 35%이하, 도로변과 측면 배치 및 10m이상 이격 등의 심의 기준을 적용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규제 중의 규제라고 본다.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절수설비계획서(외국제품) 제출을 요구하고, 여수시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불가, 전주시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통창문 설치 규제 등이 금번 규제개혁조사에서 나온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적으로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사 또는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법령에 맞게 적용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임의기준에 휘둘러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가 글을 쓰는 시점에도 안양시에서는 규제개혁 지자체 협의기간이 끝난 시점에 주차장 설치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규제를 만들었다. 규제 개혁의 끝은 어디인지,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이제는 더 이상 규제에 얽매어 건축사만 희생당할 수만은 없다. 건축관련 규제 개혁이 시작된 만큼 대한건축사협회나 시·도건축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건축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지자체에 위임도 하지 않은 조항들에 대해 임의적인 해석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임의 규제를 만들어서 건축주인 국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사를 온갖 규제로 묶어 놓고 설계업무를 하게 할 수 있던 말인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개혁에 우리 건축사들도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규제 개혁이 마냥 남의 일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건축사의 업무도 증가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와 임의 지침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설계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